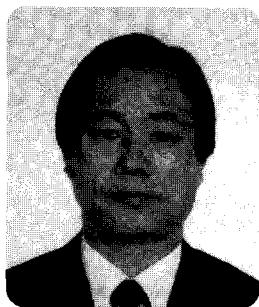


1999. 1. 1公布된 改正不正競争防止法의 解說(1)

목 차	
I. 不正競争防止法의 改正 背景	6. 外國人에 대한 適用例外조항
II. 改正 不正競争防止法의 主要 內容 解說	7. 外國關聯 영업비밀 침해사범 에 대한 加重處罰
1. 法律의 名稱改正	8. 刑事處罰 대상(保護客體, 主 體)의 擴大
2. 世界貿易機構加入國 적용주가	9. 訴追要件의 緩和(친고작률 일부 非親告罪로)
3. 不正競爭行爲의 調査 및 過怠 料 根據 新設	III. 이번 法 改正時에 반영하지 아니한 사항
4. 민사적 구제수단의 보완	IV. 맺음말
5.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 관한法 律과의 관계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다음호>



최 선 배
(특허청 조사과장)

I. 不正競争防止法의 改正 背景

이번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최근 우리 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국제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핵심기술의 유출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증가가 우려되므로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偽造商品의 제조·판매등 不正競爭行爲를 관계 공무원이 직접 조사 할 수 있도록 하므로서 건전한 去來秩序를 확립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특히, 금년 2월에 발생한 반도체기술의 해외유출 사건(KNTC<Korea Semiconductor Technology Company> 간부 2명이 '97년 5월부터 '98년초에 삼성과 LG반도체의 전·현직 연구원 14명을 끌어 첨단반도체 기술을 대만의 NTC에 유출시킨 사건)과 같은 사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였다.

이 법 개정과 관련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영위하는 일부 기업에서는 영업비밀보호의 대폭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기업들이 기술유입 및 외부 고급두뇌유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전문연구기관(기술과법연구소:소장 김문환)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외국의 입법례와 국내 관련법을 참고하여 기술 및 인력유통과 벤처기업 창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이 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중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내용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제명(題名)을 부정경쟁방지법에서「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변경하였으며,

둘째, 부정경쟁행위 또는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손해액의 추정(제14조의 2) 및 서류의 제출(제14조의 3) 규정을 신설하고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등 민사적인 구제수단은 미국, 독일, 일본등 선진국과 대동소이하므로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용이하도록 하고, 한편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손해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자를 다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

여 영업비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第18條 第1項)

넷째, 종전에는 기업의 현직 임직원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特有한 生產技術에 관한 營業秘密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직 임직원이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그 형량도 상향조정함으로써 營業秘密 침해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制度的 基盤을 확충하였음(第18條 第2項)

다섯째, 형사처벌규정은 그 적용대상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추요건이 엄격하며, 법정형이 가벼워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그 내용을 강화하였다.

형사처벌규정의 강화된 내용을 보면, 현직 임직원외에 전직 임직원도 형사처벌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보호대상은 “기업특유 생산기술”에서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비밀”로 확대하였으며, 소추요건도 현행 친고죄를 국가안보나 공공이익에 필요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규정하였고 또한 법정형량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하고, 외국관련범죄에 대해서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토록 하였으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第18條 第1項, 第2項).

마지막으로 위조상품의 제조·판매 등 부정경쟁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營業施設 또는 製造施設에出入하여 關係書類나 장부, 제품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第7條 및 第20條).

<참고> 主要 外國制度의 比較

구 분	한국 부정 경쟁방지법		독일 부정 경쟁방지법	미국 경제간침해법	
	현 행	개 정안		경쟁방지법	경제간침해
범 죄 구 성 요 건	신분범	現職 임직원	前·現職 임직원	기업임직원+비신분범	비신분범
	목적범	부정이익 또는 기업 가해 목적	前職 임직원: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경업목적, 자기사용, 제3자 이익공여 또는 가해 의도	외국이익인지 또는 원소유자 불이익인지 또는 의도
	보호 대상	기업특유 생산기술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영업상 정보	기술 또는 영업상 모든 정보(사례 나열)
	행위 태양	제3자 누설	제3자 누설	누설, 취득, 은닉, 사용	취득, 복제, 변조, 파괴, 전달 제3자취득
소속 요건	친고죄	친고죄 원칙 국가안보, 공공이익 필요시 비친고죄	친고죄 원칙, 공공이익 필요시 비친고죄	비친고죄	좌 동
기준 처벌	없음	외국관련	외국관련	외국관련	-
기타	-	-	미수·교사·승낙처벌	미수·음모 처벌	좌 동
형 벌	3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외국관련범죄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외국관련 5년, 교사등 2년)	(개인)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불 (법인) 1,000 만불 이하 벌금	(개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불 (법인) 500만 불이하 벌금

*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은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을 별도의 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규정하지 않고 형법 등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

부정경쟁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요약

구 분	조 문	내용(또는 이유)	비 고
신 설	제14조의2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용이하게 수행하도록 손해액의 추정규정을 둠 특허법의 규정 인용	특허법의 규정 인용
	제14조의3	영업비밀 침해소송시 손해액의 계산자료를 쉽게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규정	
	제18조제1항	외국관련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	
	제18조제4항	영업비밀침해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	
	제20조	위조상품 제조·판매등 부정경쟁행위 조사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그 징수절차를 규정	
개 정	제3조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국가·국장등의 사용금지 대상추가	
	제7조	위원회 축소방침에 따라 부정경쟁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삭제하고, 동 조항에 위조상품 제 조·판매등 부정경쟁행위의 조사에 대한 법률적 근거규정	
	제14조	영업비밀침해 금지·예방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연장	
	제15조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우선적용 부분을 명확히 함	
	제18조제2항	종전보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형량을 상향조정	
삭 제	제18조제5항	국가안보,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비친고죄로 함	
	제16조	파리협약 미가입국이 많지 않아 적용예외의 실익이 없으며, 미가입국인 대만의 상호주의 적 용에 따른 문제해소	

II. 改正 不正競争防止法의 主要內容 解說

1. 法律의 名稱改正

“不正競争防止法”을 “不正競争防止及營業秘密保護에 관한法律”

이번 개정된 법률 내용 중 먼저 법률의 명칭개정으로서 종전의 법에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명칭을 정하여 왔으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임을 명확히 하고,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世界貿易機構加入國 적용추가

第3條第1項 本文중 “工業所有權의보호를위한
파리協約(이하 “파리條約”이라 한다) 當事國”
을 “工業所有權의보호를위한파리協約(이하
“파리協約”이라 한다) 當事國 또는 世界貿易機
構加入國”으로 하고, 同條第2項本文중 “파리條
約 當事國의 政府”를 “파리協約 當事國 또는
世界貿易機構加入國 政府”로 한다.

WTO 협정 제4조(최혜국 대우)의 규정에 의해 동 가입국에 대해 파리협약상의 권리를 인정토록 하고 있으므로 국기·국장 기타의 화장 사용금지 대상국으로 파리협약 당사국 외에 WTO 가입국을 추가하였다.

* 참고사항

- WTO 가입국과 파리협약당사국은 일치하지 않음.
 - * '97. 10 현재 WTO 가입국 : 132개국
 - * '98. 4 현재 파리협약당사국 : 146개국
 - * WTO 가입국이면서 파리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 양골라, 피지, 자메이카 등 18개국

3. 不正競爭行爲의 調査 및 過怠料 根據新設

第7條(不正競爭行爲의 調査 등) ①特許廳長은 不正競爭行爲 또는 第3條의 規定에 위반된 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施設 또는 製造施設에出入하여 關係書類나 帳簿·製品 등을 調査하게 하거나 調査에 필요한 最少分量의 製品을 收去하여 調査하게 할 수 있다.

第20條(過怠料) ①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 公務員의 調査 또는 收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에 대하여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特許廳長에게 异議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는 不正競爭行爲의 調査·根據는 특허청훈령에 의해 위조상품 제조·판매등 부정경쟁행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조사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이 시정권고 조항만 두고 있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이 법 개정에서는 위조상품의 제조·판매등 부정경쟁행위를 관계공무원이 영업시설 또는 제조시설에 출입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제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에 대하여 過怠料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한편 檢·警 등 수사기관은 僞造商品 識別要領이不足하고 特許廳이 적발한 물품은 압수·수색 등 司法警察權이 없어 재유통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外國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고, 산업재산권 보호강화 및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특허청이 직접 사법경찰권까지 갖는 방안을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협의중에 있다.

4. 민사적 구제수단의 보완

가. 금지·예방청구권의 消滅時效 연장

第14條(時效)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시작된 날부터 3년 → 침해행위를 한 날부터 3년, 시작된 날부터 10년

이 규정은 민사적 구제수단의 보완으로서 현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소멸시효가 너무 짧아 민사적 구제방법에 의한 실질적인 보호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연장하여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 외국의 입법례

- 일본 : 3년, 10년
 - 스위스 : 1년, 5년
 - 독일 : 6월, 3년
 - 미국의 Uniform Trade Secret Act : 3년
- *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766) : 3년, 10년

나. 손해액의 추정(안 제14조의 2) 및 서류의 제출(안 제14조의 3)신설

第14條의2(損害額의 推定 등) ①不正競爭行爲 또는 営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하여 営業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者가 第5條 또는 第11條의 规定에 의한 損害賠償을請求하는 경우 営業상의 이익을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 営業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

②不正競爭行爲 또는 営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하여 営業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者는 第5條 또는 第11條의 规定에 의한 損害賠償을請求하는 경우 不正競爭行爲의 대상이 된 商品 등에 사용된 商標 등 標識의 사용 또는 営業秘密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営業秘密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자기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損害賠償을請求 할 수 있다.

③不正競爭行爲 또는 営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損害의 額이 第2項의 规定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営業상의 이익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額을 신정함에 있어서 이를 감작할 수 있다.

第14條의3(資料의 제출) 法院은 不正競爭行爲 또는 営業秘密 침해행위로 인한 営業상의 이익의 침해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相對方當事者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損害의 額을 신정하는 데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資料의 所持者가 그 資料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정하는 손해액의 추정과 서류제출의 신설문제는 손해배상청구권 제도는 침해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를 보전시켜주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로서 이는 손해를 입은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함.

그러나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의 성격상 청구권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실질적 보호를 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청구권자가 자신이 입은 손해액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액을 청구하되,

- 손해액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자신이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배상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 또한, 침해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해 통상받아야 할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신이 입은 손해의 액으로하여 배상청구가 가능도록 하고,
- 한편,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손해의 계산을 위해 필요한 서류의 제출(第14條의 3)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과의 관계

第15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 또는 商標法에 第2條 내지 第6條 및 第18條第3項의 規定과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에 의한다.
②獨占規制 및公正去來에 관한法律 또는 刑法中 國旗·國章에 관한 規定에 第2條第1號다음 내지 마자, 第3條 내지 第6條 및 第18條第3項의 規定과 다른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에 의한다.

□ 개정내용 요약

- 특허법, 실용실안법, 의장법, 상표법, 공정거래법, 형법 우선적용 →
 - ① 부정경쟁행위 및 국기·국장 사용행위 : 특허법, 실용실안법, 의장법, 상표법 우선 적용
 - ② 원산지, 생산지, 질·양 오인야기행위 및 국기·국장 사용행위 : 공정거래법, 형법 우선적용
 - ③ 영업비밀 침해행위 : 우선적용 배제

□ 개정理由

'86년말 부정경쟁방지법 개정할 때와 '91년말 영업비밀보호를 새로이 규정할 당시에는 동 법을 극히 소극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공정거래법 우선적용 규정을 두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타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기술의 부당이용)와 내용상 일부 중복되는 것이 사실이다.

- 다만,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포함적으로 규정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부정경쟁행위의 5가지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한정시킴.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과 공정거래법은 별개의 입법목적을 가졌으며,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독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자유경쟁질서 형성유지
- 부정경쟁방지법 : 이미 형성된 경쟁질서내에서 부정한 수단 금지
- *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도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와 내용상 중복되고 있으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를 규제하는 대외무역법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정거래법 우선적용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법은 시정조치, 과징금부과등 행정적 구제조치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은 금지·예방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등 민사적 구제조치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상황에서는 우선적용 조항을 삭제할 경우나 존치할 경우 모두 문제가 있으므로 공정위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부분(상품의 품질, 수량에 대한 허위표시 광고행위와 생산지등 오인야기행위)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 우선적용 조항을 존치하도록 합의하였다.

*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현행대로 존치할 경우

○ 우리청의 입장 <존치할 경우>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의 특칙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권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민사적 구제수단은 무용화되고, 행정수요만 유발하기 때문임.

- 개정·보완코자 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공정위 : 기술의 부당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사문화시키고, 형사벌칙의 직접 적용이 곤란하게 되어 본법 개정의 의미상실

- 미국의 PWL 지정 등 선진국과의 통상마찰 회피를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조상품 제조·판매행위 등 부정경쟁행위는 상품주체 혼동야기행위등(공정위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되는데 손해배상 청구 및 벌칙의 직접 적용곤란

○ 공정위의 입장 <삭제할 경우>

공정위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 수량에 대한 허위표시 광고행위와 생산지등 오인야기행위까지 특허청이 그 행위의 조사는 물론 시정권고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이제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존치되어온 우선 적용조항이었음

※ 참고로 우리법 체계와 유사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는 공정거래법 우선적용 조항을 두지 않고 있음

6. 外國人에 대한 適用例外조항 삭제

第16條(外國人에 대한 適用의 예외) 外國人으로서 파리 條約當事國안에 住所 또는 營業所 가 있는 者외의 者는 第4條 내지 第8條 및 第10條 내지 第12條의 规定에 의한 請求 등을 할 수 없다. (91. 12. 31 本條改正)

□ 삭제理由

현행 第16條에서 규정한 외국인에 대한 적용예외 조항은 파리협약 미가입국이 많지 않아 적용예외의 존치되어온 우선 적용조항이었음

<참 고> 부정경쟁행위방지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비교

구 분	부정경쟁행위방지(부정경쟁방지법)	불공정거래행위규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입법목적	○ 제3자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유지	○ 시장 지배적 지위에 맞는 독과점업체를 규제하여 공정한 경쟁조장
2. 성격	○ 상표법상의 사적이익의 보호로부터 출발한 시민법적 성격 ○ 이미 형성된 경쟁질서내에서 부정한 수단금지	○ 공권력이 사경제에 직접개입하여 경쟁의 존속보장 ○ 자유경쟁질서 형성유지
3. 행위유형	① 상품주체의 혼동야기 행위 ② 업주체의 혼동야기 행위 ③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④ 상품의 생산가공지 등의 오인야기행위 ⑤ 상품의 질·양 오인야기행위	① 거래거절·차별 취급행위 ② 경쟁자 배제 거래행위 ③ 고객유인·강제해위 ④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이용 거래행위 ⑤ 부당 구속조건으로 거래, 사업활동 방해행위 ⑥ 사업자, 상품,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 기만·오인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
4. 구제수단	○ 민사적구제 - 금지·예방청구권, 폐기·제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 형사적구제 - 징역·벌금, 양벌규정 ○ 행정적구제 - 시정권고, 고발, 의견청취	○ 행정적구제 - 행위중지, 계약조항삭제, 정정광고등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 형사적구제 - 징역·벌금, 양벌규정

실익이 없으며, ('98. 4 현재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가입국 : 146개국) 미가입국인 대만의 상호주의 적용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 인에 대한 적용예외 조항을 삭제하였다.

7. 外國關聯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加重處罰(新設)

第18條(罰則)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년이하의 懲役 또는 1억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企業의 任員 또는 職員으로서 그 企業에 有用한 技術상의 營業秘密을 정당한 이유없이 外國에서 사용하거나 外國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第3者에게 누설한 者
2. 企業의 任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企業에 損害를 기할 目的으로 그 企業에 有用한 技術상의 營業秘密을 契約關係 등에 의하여 秘密로 유지되어야 할 義務에 위반하여 外國에서 사용하거나 外國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第3者에게 누설한 者

○ 外國관련 加重處罰내용 요약(案 第18條 第1項)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범(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비해 가중처벌

○ 가중처벌규정 신설理由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뿐 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산업 스파이행위 방지차원에서 국내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비해 가중처벌로 규정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일반범(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비해 가중처벌로하여 산업기밀의 유출방지를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 미국의 경제 스파이법: 외국관련시 15년이하의 징역 (일반 범 10년)
독일의 부정경쟁방지법: 외국관련시 5년이하의 징역 (일반 범 3년)

8. 刑事處罰 대상(保護客體, 主體)의 擴大

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년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企業의 任員 또는 職員으로서 그 企業에 有用한 技術상의 營業秘密을 정당한 이유없이 第3者에게 누설한 者
2. 기업의 任員 또는 職員이었던 者로서 부정한 이익을 그 企業에 損害를 기할 目的으로 그 企業에 有用한 技術상의 營業秘密을 契約關係 등에 의하여 秘密로 유지되어야 할 義務에 위반하여 第3者에게 누설한 者

가. 刑事處罰 대상(保護客體)의 擴大

○ 보호객체(영업비밀)의 확대내용(第18條 第2項)

그기업에 特有한 生產技術에 관한 영업비밀 → 그기업에 有用한 技術上의 영업비밀로 확대

○ 확대理由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함.

종전의 형사처벌이 되는 누설대상은 모든 영업비밀이 아니라 그 기업에 特有한 生產技術에 관한 영업비밀로 국한하였음.

영업비밀의 보호대상을 확대함에 있어서 그 용어를 “그 기업에 特有”으로 규정한 것은 당해기업이 연구비를 투자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유의 영업비밀 만을 의미하며,

“生産技術에 관한 영업비밀”이라고 규정한 것은 시장조사정보, 설비투자계획, 판매방법등 경영상의 영업비밀까지 형사처벌의 보호대상으로 하게 될 경우 형사처벌대상 영업비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져 형사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을 제한하여 나머지 영업비밀은 민사적 구제수단을 활용토록 한 것임.

그러나 이와같이 형사처벌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함에 따라

제3자가 개발한 생산기술을 이전 또는 실시권을 받아 영업비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의 특유한 생산기술에 포함되지 않고

또한,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영업비밀과 경영상의 영업비밀로 분류하는데 기술상의 영업비밀중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고,

生産技術에 관한 영업비밀에는 실험 데이터, 연구개발 보고서 등과 같이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영업비밀이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따라 형사적 보호대상을 확대하되, 경영상의 영업비밀 보호에 비해 기술상의 영업비밀 보호를 보다 강화시키는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하고, 그 구분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 “그 기업에 유용한 技術상의 영업비밀”로 개정하게 된 것임.

* 외국의 입법례

- 미국 : 기술 또는 경영상 모든 정보
- 독일 :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상 정보

* 영업비밀의 분류

- 기술상 정보 : 제조방법, 제조공정, 화학방법, 배합방법, 강도계산의 운용방법, 설계방법, 설계도면, 청사진, 실험자료, 연구개발 보고서등
- 경영상 정보 : 고객의 명부, 거래선의 루트, 판매지침서, 시장조사정보, 사원연구지침서, 고객관리기법, 판매 매뉴얼, 제품의 할인 시스템, 자금조달계획, 설비투자계획, 예산배분계획, 직제개정계획 및 조직관리기법, 영업전략정보, 사업계획자료, 사업성 검토자료, 선전광고기법등

나. 刑事處罰 대상(主體)의 擴大

○ 處罰主體 확대의 내용(第18條 第2項)

現職 임직원 → 前職 임직원도 포함

○ 확대理由

종전에는 “기업의 現職 임직원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目的으로 그 기업에 특유한 生産技術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로 규정하여 現職 임직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음(이는 내부인의 누설행위는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점에서 가별성이 높고 그 행위형태도 전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임)

그러나, 前職 임직원이 재직중 영업비밀을 빼놓았다가 퇴직 후에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또는 재직중 확보해 놓은 영업비밀을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와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前職 임직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다만, 前職 임직원은 유사업체로의 전직, 재취업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받지 않도록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營業秘密維持義務를 違反하여” 누설한 경우로 하여 現職 임직

원의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한 경우에 비해 처벌대상을 한정시켰다.

- * 미국·독일은 신분법에 국한하지 않고 누구든지 처벌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에 형사처벌규정을 두지않고 형법에 의해 처벌

다.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處罰刑量 強化

- 法定刑量의 強化내용(案 第18條第2項)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상향조정 理由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형량을 특허권 침해등 산업재산권 침해사범과 동일한 수준인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량을 상향조정하여 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였다. 이는 국내·외의 입법례에서 보듯이 영업비밀침해로부터 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처벌형량을 상향조정하여 유사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 외국 입법례

- 독일 :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 미국 : 10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이하 벌금
- 일본, 프랑스, 영국등은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별도법에 규정하지 않고 형법등에 의해 처벌

* 국내 유사법

- 특허등 산재권침해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침해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침해 :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형법
 - 비밀침해 :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 업무상비밀누설 : 3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 벌금

- 절도 : 6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업무상 횡령과 배임 :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공업및에너지기술조성에관한법률의 산업정보 비밀침해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

9. 訴追要件의 緩和(친고죄를 일부 非親告罪로)

- 완화내용(案 第18條第5項)

친고죄 → 친고죄 원칙,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필수시 비친고죄

○ 완화理由

종전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일반 사경제행위로 보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함.

그러나 방위산업과 관련된 영업비밀, 국가기간산업과 관련된 영업비밀등 국가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영업비밀은 비록 기업체에 속한 것일지라도 이것이 침해되었을 경우 국익보호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산업스파이 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길 수는 없으므로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안전보장 또는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친고죄로하여 벌칙의 소추요건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국익보호의 필요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 * 수원지검의 반도체기술유출 수사결과 보고서와 국회사무처 발간 법제현안(제98-6호)의 「산업스파이방지법(기정)제정 방향에 관한 연구」에서도 현행법 보호체계의 문제점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국가에 중요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추할 수 없음을 지적함. <계속>

발록9901